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1호 2010년 3월 pp.399~429
한국세무학회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완일**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가업승계의 지원과 관련된 적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개선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속·증여세의 과세로 인한 가업상속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현행 가업승계에 대한 주요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승계의 지원요건 중에 장기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극히 저조하였으므로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

둘째, 장기간 가업 유지 요건 중에 일부의 기간 동안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최근의 가업영위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은 상속인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를 기대하고 지원하는 것이므로 승계자는 상속개시당시 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도 포기하고 있어 과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지나친 지원이다.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가업유지의무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상속세를 과세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가업을 충실히 영위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하되, 가업상속재산에 처분하여 소득이 실현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자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자본이득이 실현될 때 이월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가업에 대한 경영권의 승계를 원활하게 지원을 하고, 추후 자본이득이 실현되었을 때 자본이득세로 과세함으로써 지금의 지원제도보다는 전향적인 지원제도가 될 것이고, 조세의 공평과세측면에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가업승계, 자본이득, 이월과세, 조세장벽, 상속세, 증여세

* 본 연구는 2009년 한국세무학회 공동학술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oneltax@hanmail.net, 02-424-4451

논문접수일 2009년 7월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담세력에 응분한 과세를 하여 조세부담의 균형을 기하는 동시에 재산분배의 공평을 기하고 국가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1994). 이러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국가의 재정적인 수입원이 되기도 하지만 부의 집중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당초 입법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근래 정부는 이러한 입법 목적을 더욱 강화하여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사전에 변칙적으로 상속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증여세완전포괄과세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증여의 개념을 세법에 규정하여 각 유형별로 증여이익 계산방식을 제시하고,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유형에 대해서도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과세권 강화로 인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내외에서 2% 수준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정부가 징수하는 상속세는 연방세입의 2%가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다른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외국의 경향과는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의 분산과 공평과세를 위한다는 취지로 과세권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최근에는 이와 반대로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¹⁾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도 기업상속공제금액의 확대와 함께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 특례제도 등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에는 여전히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 등과 같은 상속·증여세 강화조치와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방안의 제약성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과중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과 함께 경영권 승계에도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업재산을 해체하여 배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은 재투자할 재원이 부족하여 성장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나아가 기업의 성장을 위축시켜서 소득세나 법인세의 재원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 정부에서는 2008.10.2.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결국 상속·증여세의 과세 혹은 중과세는 본래의 정책의도와는 달리 조세수입에 기여도 하지 못하면서 상속세부담으로 인하여 경영을 축소하거나 변칙적인 재산분산으로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tax barrier)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상속에 대한 상속과세의 완화는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2. 기업 상속과세제도 개선의 필요성

우리는 주위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던 사업주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 2세가 기업승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도산하는 사례를 흔히 보아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달리 사업주가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체를 그대로 승계하여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보다는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실물자산이 더 많은데다가 대기업처럼 잘 짜여진 조직이 없어서 경영주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을 승계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과중한 상속세를 부과 받는 상속인은 이를 금융자산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담보 설정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회사 주식을 처분하여 납부할 수밖에 없다. 만일 회사 주식의 처분이 종업원에게 알려지거나 하던 회사의 경영은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

상속주식으로 물납할 수도 있겠으나 개정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물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서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권을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까지 예상될 수 있고, 기업 상속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창업주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에 대한 고용안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기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재산가액의 20%(한도 3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을 하였다. 이러한 지원에도 중소기업 사업자단체 등에서는 지원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2009년부터는 기업상속재산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한도 60억원, 최대 100억원 지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그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소수의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부자감세라는 비난으로 조세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중소기업 사업자단체에서는 아직도 지원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더 많은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고, 상속세율의 인하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경제활동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 유지발전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국가적 입장에서든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일 수밖에 없다. 기업승계는 경영실체의 유지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상속이라는 법적 형식적 절차로 인하여 축소되거나 해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어려워진 국내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일자리의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지원제도가 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같은 형식논리가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논거에 따라 상속세의 과중한 과세로 인한 가업상속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의 적정한 과세방안 및 그로 인한 관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가업상속의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3. 선행연구의 검토

가. 가업상속에 대한 연구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지원방안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상철(2007)의 연구에서는 경영권프리미엄과 관련하여 할증평가를 하는 것에 대하여 주요외국의 사례와 같이 할인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부연납기간의 연장, 자사주식의 사전상속제도의 도입과 가업상속공제의 한도의 조정, 가업승계기업에 대한 상속세 점진적 감면을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식의 사전상속제도의 도입과 가업상속공제 한도의 조정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다.

최봉길(2007)은 중소기업의 사업승계에 지원방안으로 주식의 할증평가의 배제와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나 독일의 기업승계자 부담경감을 위한 법안의 도입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승필(2008)의 연구에서는 피상속인의 가업운영기간, 대표이사 재직기간, 최대주주비율과 같은 가업승계요건의 완화와 세액공제의 확대,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율의 축소와 같은 세제의 지원을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가업승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업상속공제의 확대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보완 등과 같은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나.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연구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무상이전자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명근(1990)의 연구에 의하면 자산의 무상 이전시에 실현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어렵다면 수증자가 그 자산을 양도할 때

에 승계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채현석(2000)의 연구에서는 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의 개념에 포함시켜 자산의 무상이전시점에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하고,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날의 시가, 즉 무상이전자의 당해 자산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경봉·정희선(2006)의 연구에서는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승계제도를,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의 도입을 주장하고, 차선택으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모두에 대해서 취득가액승계제도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일정한 기업승계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업상속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주요 외국의 상속과세의 추이와 과세방식을 비교분석하고 상속과세와 자본이득과세의 조합을 통하여 기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주요국가의 기업관련 상속과세

1. 상속세 존속국가의 상속과세제도

가. 상속세제의 공과 논의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불로소득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피상속인의 미실현된 생전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소득세의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상속세는 조세입법의 목적에 맞게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여 기회균등을 실현하며, 부의 독과점적 집중현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세의 조세입법목적은 오늘날 그 달성여부가 의심스럽다는 견해가 많다. 현행 상속세의 조세수입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효과 또한 미미하고, 정부부과과세제도로써 그 징세비용도 많이 발생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세입법은 사회·문화적인 현실과 국민정서의 공감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과세 완화방안을 목적으로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주요외국의 기업 관련 상속과세제도

(1) 일본

우리나라와 조세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 상속과세는 취득과세형에서 수정된 법정상속

본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을 취하고 있으며, 사업승계에 관해서는 최근에 증여세와 상속세 납세유예제도를 창설하였다. 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비상장회사의 대표권을 가지는 자가 경영승계수증자에게 비상장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그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에 관련한 증여세액 전액을 증여자의 사망시까지 납세를 유예하고 있다(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7).

상속세 납세유예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정승계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그 인정승계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후계자가 납부할 상속세 중 그 주식 등과 관련한 과세가액의 80%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그 경영승계상속인의 사망일까지 그 납세를 유예한다(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7의2).

자산의 이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한 수입으로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무상양도(법인에 대한 증여 및 유증·한정승인에 관련된 상속 및 포괄유증) 또는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법인에 양도한 경우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일본 소득세법 제59조).

이와 같이 법인에의 증여, 한정승인에 의한 상속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속 및 개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그대로 인계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납부한 상속세를 그 취득비용으로 계산한다(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39조).

(2)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하나로 통합하여 유산취득세형으로 과세하고,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투기거래에 의한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고 있다(財團法人日本稅務研究センター 2004, 155~183). 또한 사업체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3중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사업자산, 농업사업체, 자본회사(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전체의 1/4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의 가치평가에 대해서 256,000Euro의 특별공제(독일 상속세법 제13a조 제1항)를 하고, 이어서 특별공제 이후에 남은 자산의 평가에서 남은 가액의 60%로 평가하였다. 상속세의 납부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10년간 납부이연을 허용하였고, 사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대해서는 납부이연을 무이자로 허용하고 있었다(김유찬 2003, 120).

최근 독일의 입법권자는 이 기업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혜택은 당연히 기업의 지속적 운영과 결부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기업자산을 넘겨주고 이를 계속 운영해나가는 기업가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첫 번째 대안으로 기업은 상속(증여) 당시의 임금기준으로 고용수준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자산도

10년 동안 90% 이상 유지하면 10년의 기간 동안에 상속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서 10년이 지나면 모든 상속세 부담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안은 기업이 이 기간을 7년 동안 유지하는 경우 상속된 기업자산의 85%를 비과세하고 15%는 과세한다는 것이다.

(3)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2001년 제정된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은 2007년까지 상속세 최고세율의 단계적 인하와 2010년까지 상속세를 완전 폐지 등을 규정하였다. 이 법안은 한시적인 형태의 법률이기 때문에 후속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11부터는 과거법률이 적용된다.²⁾ 이와 같이 유산세를 폐지하기 전에는 유산세의 면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고, 최고명목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 조정하되, 증여세는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증여세를 폐지하면 조세회피가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하지 않고 증여세를 소득세의 보완적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는 취지이다. 이 때 증여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로 과세하며 증여세의 최고명목세율은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과 일치시키게 된다(최명근 2002, 27).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사업 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 사업은 피상속인의 개인사업 또는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이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지분에 대해서 최고 130만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일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로 추징하게 된다.

(4) 영국

영국의 경우에는 상속에 의한 무상이전에 대하여 자본이득세와 자본이전세를 동시에 과세하면서 자본이득세는 채무로 보아 유산가액에서 공제하였다. 그러나 1986년부터 자본이전세는 상속세로 대체되었고, 현재는 가치의 무상이전에 대해서 상속세만 과세한다. 즉 상속으로 인한 무상이전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무상취득자가 그 자산을 양도할 때 소득계산상 취득가액은 신규취득가액인 무상이전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처분으로 의제하여 증여시점의 시가에 의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TCGA 1992, s 17 (1)(a)), 이연공제(holdover relief)가 가능하다(안경봉·정희선 2006, 11).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용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개인 또는 파트너십 출자지분과 비상장주식은 100%, 상장주식이나 토지·건물·기계류는 50%를 공제한다.

2) 미국에서는 클린턴 정부 말기부터 연방 상속세의 폐지가 논의되었고, 부시정부에 의하여 2010년 이후에 상속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부터도 현행 세율인 45%를 유지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상원에서는 상속세율을 35%로 수정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속세의 과세는 오바마의 공약사항이고 2009. 2.26.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심의 및 의결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최근 상속세 완화 동향

상속세의 폐지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논의의 주요 논거는 바로 상속세의 부과가 조세수입증가와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합리적인 경제행위를 유발하는 역기능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1년 상·하원의 합의를 거쳐 상속세 폐지 법안(한시법)을 통과시켰으며, 그 적용은 2010년으로 유예하였다. 부시 정부가 발표한 The President's Agenda for Tax Relief(2001)에서 상속세 폐지와 관련되는 제안내용을 요약·발췌하면 다음과 같다(William W. Beach. 2001).

- 경제성장에 낮은 부담의 조세는 순기능 작용을 한다.
- 한계세율이 높으면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 상속세는 자본에 대해 또 다른 부담의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방해한다.

위 제안서는 상속세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상속세 폐지에 합의한 것이다. 물론 미국의 기부문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있고 이러한 민간경제 스스로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자정노력 또한 상속세 폐지에 힘을 실어 주었다.

2. 상속세 폐지국가의 제도

가. 상속세 폐지 논거

상속세의 폐지 배경은 상속세의 입법목적과 연관이 있다. 상속세가 가지는 정책적 효과와 조세수입의 정도는 당초 상속세를 도입할 때 예상한 것과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당초의 입법 목적은 소득세를 보완하고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기회균등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상속세는 징세비용의 과다발생에 비하여 내국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이내로서 과세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과세의 폐지론이 등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상속과세폐지를 주장하는 핵심관점은 상속과세로 징수되는 세수입 상당액의 자원을 공공부문의 지배·관리하에 두는 것이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 아니면 이를 민간부문의 지배·관리하에 두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집약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로 The Heritage Foundation은 1996년 8월에 “The Case for Repealing the Estate Tax”(연구책임자 ; William W. Beach)에서 경제수학모델을 사용하여 상속세의 폐지는 경제에 방대하고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즉, 사망세를 폐지하면 그 후 9년간 국민경제는 매년 110억불의 생산이 증가할 것이고, 매년 14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개인의 소득은 매년 평균 현재의 계획을 초과해서 80억불이 증가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상속과세로 미미하게 징수되던 세수입

을 소득세수의 증가로 보상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1993년에 수행된 경제수학적 연구에서 George Mason대학교의 Richard E. Wagner교수는 상속과세를 폐지할 경우 그 후 8년 내에 연간 생산이 8조달러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25만개, 자본축적이 64조달러 증가하리라고 추계한 바 있다(최명근 2002, 86~87 재인용).

이와 같이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학계나 조세를 다루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1972년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연방자본이전세를 폐지하고 배우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증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혁하였다. 또한 호주는 1977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하였고, 뉴질랜드는 1992년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다(Gale G. William and Joel B. Slemrod 2001, 17). 근간에는 유럽에도 상속과세제도의 폐지입법이 확산되어 2004년부터는 포르투갈·슬로바키아가 폐지하였고, 2005년에는 스웨덴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다.

나. 자본이득세 과세제도

상속과세제도의 폐지론은 캐나다 또는 미국 등 자본이득세 대체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최명근 2007, 139). 상속세의 폐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소득인 미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소득을 원천별로 4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세율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자본이득에 존재하고 있는 결집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이득의 50%만을 합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자에게 상속할 때 그 주식의 평가액이 5,000원이라고 한다면 4,000원의 자본이득에 50%인 2,000원의 자본이득만이 아버지의 과세소득에 합산된다. 그리고 이 주식을 자가 6,000원에 양도하면 1,000원의 자본이득이 실현되고 그 중 50%인 500원이 자의 과세소득에 합산되는 것이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배우자간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종 배우자가 사망할 때만 비로소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에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다(채현석 2007, 111~112).

상속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자본이득과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의 자본이득을 산정하는 경우 무상취득시점의 공정시장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현행 규정은 상속세가 폐지되면서 조정취득가액승계제도³⁾를 도입한다. 다만 증여의 경우에는 신규취득가액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3) 자본이득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조정취득가액과 사망당시의 재산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3. 우리나라의 상속과세

가. 일반상속과세

(1) 상속세제 도입 및 과세현황

우리나라의 상속과세는 재산을 무상취득한 자의 조세부담의 균형과 재산분배의 공평을 기하고 국가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상속세는 1950년 3월 22일(법률 제114호) 제정 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유산세형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유형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을 과세베이스로 과세함으로써 한 개인의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진 유산에 대한 누적된 조세관계를 정산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시점의 재산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그런데 실제 상속세 부과는 전체 피상속인 중 1% 이내의 피상속인에게 적용되고, 대부분은 상속세과세표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상속세의 세수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수년간 총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이내로 미미하다. 이와 같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는 실제적인 세수의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 연도별 상속세·증여세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내국세	82,225,915	92,231,158	95,276,356	104,427,868	113,879,497	132,508,138
상속세	397,819	485,302	588,328	701,964	867,649	1,058,963
점유비율	0.4	0.53	0.62	0.67	0.76	0.80
증여세	458,344	829,756	1,119,918	1,170,863	1,521,643	1,782,954
점유비율	0.56	0.90	1.17	1.12	1.33	1.34
합 계	856,163	1,315,058	1,708,246	1,872,827	2,389,292	2,841,917
상속·증여세 점유비율	1.04	1.43	1.79	1.79	2.09	2.14

※ 자료 : 국세청. 2009년 「국세통계연보」 재구성

이러한 세수 비율은 조세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대부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였거나 폐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속·증여세가 비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함에도 상속세제의 개선에 많은

4) 2006년 기준으로 피상속인수는 304,215명 중에서 301,994명은 과세 미달되었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결정된 피상속인수는 2,221명(0.73%)에 불과하였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상속세제가 세수의 증대보다는 부의 분산과 공평과세의 원칙이라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식의 변천

상속세와 증여세는 1950년에 각각 제정 공포된 이래 많은 개정이 반복되었고, 최근에는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재산의 대물림 또는 상속·증여세의 포탈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빈번한 개정이 있었다(김완일·고경희 2009, 429~431).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1996년(법률 제5193호) 전면개정을 통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고, 이때부터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거의 연례적으로 증여의제나 증여추정의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법률 제6301호)에는 자본거래를 통한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2002년(법률 제6780호)에는 신탁의 이익, 보험금을 통한 증여의제, 저가·고가 양수도, 채무면제, 토지무상사용,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등 일반적인 거래의 증여의제 규정을 도입하였고, 자본거래로서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의제 등을 확대하면서 법령에 규정한 과세요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변칙상속·증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예시규정에도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2003년(법률 제7010호)에는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상속과세는 국제적 추세와는 달리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꾸준히 과세요건을 강화해왔다.

(3) 기업 관련 상속과세의 우대제도

우리나라 상속과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기반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기초공제와 함께 인적공제를 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에게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업을 생전에 승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가) 기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이 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공제금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는 80억원,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는 100억원)을 공제한다.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그 지원대상과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 세제지원 대상인 가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가업을 상속받은 후 10년 안에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가업용 자산을 100분의 80(5년 이내에 100분의 90)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가업상속공제 개정연혁

적용기간	가업상속공제액
1997.1.1. ~ 1998.12.31.	① 공제대상 : 5년 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가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 ② 가업상속공제액 : 1억원
1999.1.1. ~ 2007.12.31.	① 공제대상 : 5년 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가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 ② 가업상속공제액 : 가업상속재산(1억원 한도)
2008.1.1. ~ 2008.12.31.	① 공제대상 : 15년 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중소기업 ② 가업상속공제액 : 다음 중 큰 금액 ㉠ min(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0억원) ㉡ min(2억원, 가업상속재산가액)
2009년부터	① 공제대상 : 10년 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중소기업 ② 가업상속공제액 : 다음 중 큰 금액 ㉠ min(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60억원(15년이상 80억원, 20년이상 100억원)) ㉡ min(2억원, 가업상속재산가액)

(나)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상속재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이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이 공제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등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당해 영농상속재산가액 중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정부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의 계속성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경영 know-how의 전수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이 특례제도는 장기간 중소기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에게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식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특례제도에 의한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주식 평가액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다.

이와 같은 특례제도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기업 승계를 한 이후에 증여자에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시점에 상속세로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 자본이득과세

(1) 현행제도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이란 자본자산(capital assets)의 처분가액 또는 시가와 그 자산의 원가와 의 차액, 즉 자본적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득을 말한다. 자본자산은 부동산, 주식과 채권, 기업의 매각, 파트너지분 등이 포함되며, 이들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 과세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이득과세는 소득세법에서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 소득으로 크게 나누어 과세하면서 자본이득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의 과세체계에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성향을 정책적으로 억제하 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과 과세기술상의 문제로 인하여 부동산과 일부의 유가증권 등의 양도소 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 면,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상장법인의 대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가 보 유한 주식이나 비상장법인 주식, 기타자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다(안수남·김동 백·김강영 2007, 263~273).

양도소득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양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으로 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취득가액과 설비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을 말한다.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무상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는 상속이나 증여시점의 과세 가액으로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율의 적용은 재산의 종류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과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보유하거나 사업목적 이외 의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주식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분하여 기업 규모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차별하여 과세하고 있다.

(2) 현행 과세체계에서 도입 가능한 자본이득 계산유형

토지나 주식 등의 보유에 따라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법으로는 무상이전시 자본이득 과세방법,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 신취득가액 과세방법 등이 있다.

(가) 무상이전시 자본이득과세

1) 과세방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상속인 등에게 무상이전 될 때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을 보유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피상속인의 생전에 발생한 미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청산하는 의미로 과세되므로 상속공제가 상속세과세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영원히 과세되지 아니하는 불합리함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생전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하는 체계이므로, 피상속인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을 생전에 양도한 후 현금으로 상속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그대로 상속하더라도 경제적 담세력에 부합되는 조세부담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방법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과 현행 소득세법과 같이 양도소득(분류과세)으로 과세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은 집중효과로 인한 세부담의 지나친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폐지한 캐나다에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의 50%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財團法人日本稅務研究センター 2004).

2) 문제점 및 한계

이러한 과세방법은 상속개시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자본이득세를 과세한다면 이중으로 부과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클 수 있고, 상속은 그 특성상 무의도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양도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세이론상 수평적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한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집중효과가 발생되어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나) 승계취득가액과세

1) 과세방법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상속재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를 유예하고 상속인이 양도하였을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동안의 자본이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상속인의 상속재산 양도가액에서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이연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함으

로써 소득이 실현되었을 때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 과세방법은 상속세 폐지주장 근거의 하나인 사업의 원활한 승계와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 우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은 상속세의 완전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 부분적 폐지를 전제로 하더라도 사업승계의 정책적 목적에 적합한 방법이므로 국가정책적 목적을 이해시켜 준다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제점 및 한계

이 방법은 무상이전자에게 발생한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공백 없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후 양도시에는 자본이득과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자산을 무상으로 상속·증여를 받은 이후에 유상양도를 하지 않고 사망시까지 보유하였다가 그의 사망시에 다시 상속으로 무상 이전시킨다면 여러 세대에 걸쳐 발생된 누적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장래로 이연되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

(다) 신취득가액과세

1) 과세방법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로서 과세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과세베이스로 하여 자본이득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무상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자본이득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상속·증여시점의 시가를 적용한다. 이 때 적용되는 시가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때 적용한 과세가액이 상속인·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된다. 이 방법은 자산의 무상이전시점에 자본이득의 실현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계취득과세방법과 같으나 피상속인이나 증여자 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해서 영원히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2) 문제점 및 한계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과 같이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 동안에 증가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게 되고, 증여재산도 마찬가지로 증여자가 취득하여 증여할 때까지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에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나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의 부과는 물론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보유기간동안 발생·누적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공백이 발생된다. 이러한 과세방법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종신까지 보유하다가 상속을 시키도록 하는 유인을 줌으로써 부동산의 유동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Ⅲ. 우리나라 기업상속과세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상속과세 폐지 및 존치에 관한 논의

가. 상속세 폐지의 주장

상속세를 부과하는 입법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득세의 보완적인 조세라는 점과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기회균등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속세의 부과는 사망자수에 비하여 매우 낮아 입법목적의 효과는 미미하고 일반적인 국세와 달리 조세수입대비 징세비용이 높아서 조세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피상속인은 상속세 과세를 예견하여 그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보다 통상적인 소비성향이 높아지게 되므로 저축이 감소하게 되고, 저축이 감소하면 투자가 감소하게 되어 국가 경제력이 둔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최명근 2002, 52~55). 사업승계에 있어서도 상속세의 과세는 사업승계와 경영권 방어를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 사업자단체에서는 상속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폐지해야 마땅하고,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사례가 많아 경영권 유지마저 위협받게 되므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의 부과는 기업의 승계를 저해하므로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고 부득이 하게 과세를 하더라도 소득세율로 과세하자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김정호 2008, 21).

나. 상속세 존치의 주장

상속세의 폐지 주장은 적어도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헌법에서 국가가 소득의 적절한 재분배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헌법 제119조 제2항)를 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제가 필수적임을 의미하며,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 필수적 구성요소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 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제가 담고 있는 공평 이념을 전제로 한다면 효율의 면에서나 공평의 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소득세보다 확고한 존재근거를 가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효율 면에서 부작용이 훨씬 적으면서도 출발점의 평등을 통해 소득세보다 한층 더 소득의 적절한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성락인·박정훈·이창희 2002, 169~176).

상속세와 증여세가 다른 세제에 비하여 더 확고한 헌법상의 근거를 갖는다는 점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바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제척기간은 다른

세목에 비하여 장기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4호 단서), 더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이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장기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와 공평과세의 이념 등에 비추어 위 제척기간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⁵⁾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과세하고 있는 증여세의 열거주의 과세방식은 효과적으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 12월 세법 개정시에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증여의제규정을 도입하였다. 2002. 12월에는 자본거래외의 일반적인 증여의제규정에 대해서도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도입하였다가 세법에 과세대상 외의 새로운 과세형태에 부를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할 수 없었다. 이에 2003. 12월 세법 개정시에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최근에는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상속·증여세의 과세의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기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2. 기업관련 상속세제의 문제점

가. 조세장벽(tax barrier)에 따른 기업상속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족적인 회사운영이 대부분으로 개인과 회사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은 대부분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담보로 설정하여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을 승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상속세의 납부도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신상철 2007, 21~32)에 의하면 중소기업 1,87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7.1%가 사업승계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업승계의향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78.2%는 가업승계를 하는데 주된 장애요인으로 과중한 조세부담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가 어려운 이유로 현금 등 납부에 필요한 기타자산의 부족을 꼽은 응답자는 48.2%나 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업무용이나 경영자의 사적인 재산의 대부분이 담보의 설정 등으로 인하여 세금납부가 용이하지 않다. 더군다나 상속세나 증여세는 과세대상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으나 담보물 제공과 함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상속으로 무상취득한

5) 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두9431 판결.

자산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장벽(tax barrier)은 기업승계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기업상속을 원활히 하고, 고용의 승계와 확대를 위해서는 상속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나. 기업상속공제 요건의 비현실성

기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기업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은 중소기업에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여야 하고, 기업의 전부를 승계 받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기업에 종사하였어야 한다. 또한 해당 법인의 지분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은 4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기업상속공제의 규정은 전제제약이 까다롭고 공제금액도 2007년까지는 1억원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극히 적조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

다. 기업상속시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의 불합리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가의 개념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시가로 보게 되므로 실무적으로는 사례가액을 찾아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거의 찾을 수가 없어서 대부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지금까지 적용되어 온 보충적 평가방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단순 평균하는 방법을 적용하다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3과 2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적용방법에 차이만 있을 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않았고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다. 또한 그렇게 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그동안 납세자와 과세권자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였고, 주장하는 평가액의 차이도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우택 2003). 이 평가방법은 기업의 규모, 업종 및 기업의 경영방침, 자산의 보유규모, 수익 창출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평가액이 실질가치와 괴리될 가

6) 기획재정부가 2007.10.17일 오세재 대통령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업상속 공제를 받은 사람은 2004년 44명, 2005년 39명에 이어 2006년에는 4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조세일보, 2007.10.17).

능성이 매우 크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정비가 시급하다(이우택·김완일 2008, 39).

(2) 확실적인 할증평가의 강제 및 할인평가 규정의 미비

세법에서는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회사의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경영권프리미엄과 관련하여 초과금액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이 규정에서 할증평가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평가한 가액에 대하여 그 가액의 20%(중소기업 10%) 또는 30%(중소기업 15%)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할증평가는 단순히 주식의 보유비율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대법인의 경우에 보유주식이 미미할 지라도 이사의 임명권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특수관계자간의 주식보유비율만을 할증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이우택 2003, 610~612).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주식거래의 시장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기업의 경영지배가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산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수익력이 높은 기업의 최대주주는 경영지배권의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가치는 증가할 수 있겠지만 도산의 위험이 큰 소기업은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당해 기업의 핵심인물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산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핵심인물이 이동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상속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을 감안하기보다는 할인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3) 비상장주식의 물납제한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받는 경우에 세금을 물납하면 물납가액과 매각가격의 차이로 인해 국고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여 2008년부터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였다. 예외적으로 비상장주식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였다.

물납은 상속·증여재산 중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일시에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물납을 허용하였는데 행정편의만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특히,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불합리하여 적정한 시가를 나타낼 수 없어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납세자는 해결 방안이 없다. 따라서 물납제도가 국세징수확보라는 목적외에 납세자편의 제공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장주식의 관리·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물납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보다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조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3.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문제점

가.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과세베이스 구축의 미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투기적인 부동산 투자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양도소득세의 도입 초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을 예외로 적용하였으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과세베이스 구축이 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투기성 거래의 경우 등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왔었다. 이러한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해서 2007년부터는 모든 경우에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적용되던 기준시가 과세원칙과 비과세·감면규정과 같은 조세우대조치의 남발로 인하여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과세베이스를 침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평적 및 수직적 공평의 손상, 세제의 복잡화 및 양도소득세 기능의 약화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현저하게 드러내고 있다.

나.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현행 소득세법에서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자본시장을 보호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비과세하고, 예외적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나 장외거래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즉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하여 아무리 많은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복잡하게 규정하게 된다. 즉,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에 따라 소득세법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법에서는 배당소득이 아니면서 주식을 보유하던 자에게 주식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의제배당을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과세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같은 법 제41조의 3에 의한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같은 법 제41조의 5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은 폐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자본이득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과세하면 조세법 체계가 단순해질 수 있음에도 복잡하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법인은 20%, 중소기업은 10%의 세율에 의하여 다른 자본이득보다는 낮은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에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외거래주식과 당해 상장법인 주식의 3%(코스닥상장법인 및 벤처기업의 주식은 5%)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 및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0% 또는 30%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이와 같이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대주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분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차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4. 가업상속공제의 확대와 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포기

가. 가업상속공제의 확대

오랫동안 상속·증여세의 과세강화로 인하여 가업상속공제는 2007년까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1억원 한도로 공제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공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지원하는데 미약하여 2007.12. 세법개정시에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하였고, 이어서 2008.12. 세법 개정시에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종전의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였다. 가업상속공제율도 종전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하였고, 가업상속공제금액도 종전의 30억원에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요건의 완화와 공제금액의 확대는 가업상속을 지원하는 방안임에는 틀림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나친 감세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포기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다만, 상속 또는 증여와 같이 무상 이전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방식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상속·증여세과세가액이 자본이득을 계산하는데 취득가액으로 되는 것이다.

유산과세형의 상속세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속과세제도에서 가업상속공제금액의 대폭

확대는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의 면제뿐만 아니라 가업승계자 이외의 상속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피상속인이나 증여자 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는 상속세의 과세포기 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권 포기문제까지 발생되고 있어서 일부의 납세자에게 지나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IV. 가업상속공제와 자본이득과세의 개선방안

1. 가업상속공제의 확대와 자본이득과세의 이월과세

가. 가업상속저해 조세장벽의 제거

그동안 적용하였던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비현실적이고 공제금액도 극히 미미하여 적용되는 사례가 흔치 않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한도 3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지원에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하여 2009년부터는 가업상속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한도 60억원부터 최대 100억원)을 공제하도록 대폭 확대하였다.

이러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은 세금이 가업승계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신상철 2007, 21~32). 이에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업이 승계되는 과정에 부과되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면제를 통하여 조세장벽(tax barrier)을 제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자본이득의 이월과세

상속세는 기업실체(business entity)가 변동됨이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이러한 미실현소득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는 가업승계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므로 이에 대한 조세장벽(tax barrier)을 제거시키는 방안의 도입이 절실하다.

가업상속에 대하여 조세특례조항을 두어 우대하려는 논거는 가업상속으로 기업실체(business entity)에는 어떤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닌데도 과중한 상속세가 부과되어 가업상속을 어렵게 하는 조세장벽이 발생하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데 있다. 즉 가업상속이라도 기업실체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는 국가 사회적 입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승계하는데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하여 과세를 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결국 가업상속을 저해하는 과중한 조세장벽의 제거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밖에 없고, 그 대안으로 자본이득 이월과세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주요국가에서도 이미 자본이득에 대한 이월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세장벽(tax barrier)을 제거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속세의 납세를 전액 유예하는 지원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 지원방안으로는 기업의 합병에 대해서는 처분할 때에 과세하도록 과세이연⁷⁾하는 방안과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원용하여 자본이득과세로 이연하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⁸⁾ 즉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에 가업을 충실히 발전시켜 나간 경우에는 소득이 실현되었을 때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⁹⁾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1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하는 것은 지나친 지원으로 볼 수 있으며, 피상속인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서조차 과세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둘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가업을 유지할 의무와 함께 그 의무를 지킨 경우에는 유예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가업상속에 대해서 정부의 승인을 얻고 일정한 유예기간동안 가업을 충실하게 영위한 경우에는 과세유예한 상속세를 면제하고, 그 대신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실현되었을 때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으로써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2.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완화 및 사후관리의 합리적 강화

가. 피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에 피상속인은 중소기업을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

7) 합병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승계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다만,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평가하여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합병평가차익은 자산의 평가차익에 해당되므로 익금에 산입된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8)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9)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자 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해서 조차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나친 지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승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단계에서 자본이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공제금액을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다. 장기간 가업을 영위한 사실의 판단은 피상속인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이 규정에 의하면 최근 10년부터 2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더라도 전체 영위기간의 80%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최근에 10년 중 8년 이상 또는 20년 중 16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더라도 가업의 전체영위기간 기준으로 80%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 가업을 유지하면서 일부의 기간 동안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최근의 가업영위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최대주주의 요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보유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은 상장법인의 경우에 최대주주 지분을 4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적용된다. 실제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경우에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유치를 할 수도 있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유치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예상된다.

이 규정에서 일정한 지분을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최대주주에 해당될 것을 요구하는 입법취지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1항). 따라서 당해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대주주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 사후관리의 합리적 강화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상속인 1인이 가업승계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 가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를 합리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0년간 사후관리를 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가업에 종사할 의무와 주식 등의 처분금지의 의무 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후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것은 상속인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를 기대하고 지원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의 의무도 함께 부여하여야 마땅하다. 가업에 대한 고용유지의 의무는 최소한 상속개시당시 상시고용인원의 80% 이상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은 상속인에 대한 의무규정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세액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사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상속세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되므로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자본이득과세제도의 도입

가. 도입 가능한 자본이득과세의 유형

무상이전시 자본이득 과세방법은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영원히 과세되지 아니하는 불합리함을 해결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반면에 이 방법은 상속개시시점에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세금부담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이 발생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서는 상속개시시점에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시점에서 과세할 수 있는 승계취득 과세방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나.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

(1) 적용방법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의 도입방안의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시점에 도입 가능한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은 부분적인 상속세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인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원용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통합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은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제지원제도를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으로 전환하면 조세부담을 이연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어 가업의 원활한 승계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2) 적용대상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시점 등 수익이 실현된 시점에서 자본이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적용되었던 가업상속공제는 그 적용범위의 엄격한 제한으로 그 적용을 받은 납세자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적용범위를 다음의 <표 3>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넓게 규정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법인에 대해서는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사후관리가 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부과한다.

<표 3> 자본이득과세 개선방안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10년	5년
최대주주지분율	원칙적으로 50% 이상 (상장법인 40% 이상)	30% 이상인 최대주주
의무불이행	상속세 부과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가산

(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와의 관계

2008년부터 피상속인이 장기간 운영하던 사업을 생전에 자녀 등에게 주식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특례세율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이 규정은 창업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상속세로 정산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은 현 상속세제와 동일한 결과가 예상되어 상속세의 불합리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규정이다.

그러나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업이나 2세가 경영 능력이 탁월한 경우에 가업을 사전 증여하면 기업이 원활하게 승계되어 발전할 수 있으므로 현행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병행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과세 구분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40을 공제한다. 이 경우에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이 개인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과 같은 사업용 자산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해서 적용한다.

개인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과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추후에 적용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각각 상이하게 부담될 수 있다. 반면에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확립적으로 판단

할 수 없을 것이나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가업영위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므로 상속개시일 전에 법인전환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장기간 미양도로 인한 미과세 문제의 대응방안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은 상속재산을 장기간 유상양도를 하지 아니하면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식이므로 장기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측면도 있다. 기업의 승계를 통하여 고용의 유지와 확대를 지원하는 조세정책이라면 비판의 여지는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의 도입에 따른 대책

가. 사후관리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현행 상속세 과세유형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이므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사업승계의 사후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사후관리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추후 상속세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의 적용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 적용의 범위를 가업승계자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취득과세형의 상속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나. 취득가액의 관리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의 도입에 따른 성패는 취득가액의 관리이다. 이것은 최소한 두세대 혹은 여러 세대에 소급해서 그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을 추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 과세행정에 있어서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망자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납세의무자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을 폐지한 사례가 있었다(안경봉·정희선 2006, 20~21).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국세통합시스템(TIS : Tax Integrated System)에 의하여 각 개인의 재산과 소득 등의 현황에 대하여 개별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한 상속세 신고시에 납세자에게 승계취득가액의 적용을 위하여 취득가액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본이득합산에 따른 집중효과의 보정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은 피상속인의 자본이득과 상속인의 자본이득이 합산되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 누진세율 아래에서 집중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특히 주식의 양도소득은 단일세율로 과세되므로 개인의 사업용 자산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토지¹⁰⁾를 제외한다면 사업용 자산은 대부분 기업경영에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현실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면 그 사용가치는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자본이득은 없을 것이다. 즉, 적정사용기간의 사용 전에 처분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다면 집중효과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집중효과의 완화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공제율의 조정 등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용 자산에 대한 집중효과가 우려된다면 기업상속 전에 법인전환을 통하여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양도소득 계산 규정의 정비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에 의한 자본이득과세는 소득세법의 수정 보완이 필수적이므로 자본이득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은 상속세의 완전폐지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을 두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례규정을 두는 입법이 필요하다.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개념을 살펴보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소득세법 제88조). 그러므로 양도의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없으나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한 “취득의 시기”와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그 기준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를 강화하여 왔다. 특히 최근 10여년간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칙적인 사전상속이나 증여행위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상속과세는 전체 세수입

10) 토지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장기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의하여 집중효과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에 비하여 매우 미미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상속에 있어서는 큰 조세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요국가에서도 상속세의 과세실적과 그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많은 주요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하였거나 폐지 중에 있다. 학계나 재계 등에서는 현행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방식은 일시적 과중한 상속세부담으로 가업상속을 저해하므로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자는 의견 등 새로운 과세방식의 재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요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은 국가경제활동의 주역이므로 각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업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정책적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가업상속에 대한 조세특례는 단지 상속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보다는 가업이라는 상속기업의 계속성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논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과세문제는 과중한 상속세과세가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가경제적 입장과 무상이전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로 조세공평성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서로 상반되는 논리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가업상속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을 제거하고 동시에 조세공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자본이득과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미 주요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 제도는 가업상속과 관련된 모순된 입장을 조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수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시점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면서,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의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이 도입되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도입은 상속개시시점에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추후 상속인이 처분하는 시점에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자본이득세로 과세함으로써 경영권의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경영권 승계에 따른 자본이득과세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상속세가 폐지되고 전면적인 자본이득과세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청. 2009. 「국세통계연보」
- 김완일·고경희. 2009.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이텍스코리아
- 김유찬. 2003. “독일 상속증여세제도의 정책시사점”.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제19집
- 김정호. 2008. 「CFE Rreport 상속세, 이래서 폐지해야한다.」. 자유기업원
- 성락인·박정훈·이창희. 200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4호.
- 신상철. 2007.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안경봉·정희선. 2006.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안수남·김동백·김강영. 2007. 「양도소득세 2007」. 광교이텍스
- 이우택. 2003.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 국세청 연구보고서
- 이우택·김완일. 2008. 「신경제시대 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연구보고서
- 정해욱. 2007. 「종합소득세실무」. 영화조세통람
- 채현석. 2007.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명근. 1990. “부의 무상이전과 자본이득과세와의 관계소고.” 「세무학연구」 제1호
- _____. 2002.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 _____. 2007. 「상속과세폐지론」. 경제법륜사
- 최봉길. 2007. “중소기업사업승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21권 제2호
- 최승필. 2008.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법제개산방안.” 한국공법학회 공법 연구 제36집 제4호
- 한국법제연구원. 1994. 「대한민국 법률연혁집 제15권」: 내국세(3): 611
- 財團法人日本稅務研究センター. 2004. 「世界における相續稅法の現状」. 日稅研論集 第56号
- Beach, Richard E. Wagner. 1993. “Federal Transfer Taxation”: A Study in Social Cost. Washington, D.C.: Institute for Research on the Economics Taxation
- Gale G. William and Joel B. Slemrod. 2001. “Rethinking the Estate and Gift Tax.” The Brookings Institution
- William W. Beach. 2001. “Time to Repeal Federal Death Tax: the Nightmare of the American Dream”, Backgrounder, The Heritage Foundation, April 4

An Introduction of Capital Gain Tax System to Support Family Business Succession

Kim, Wan-i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support the current associated with family business succession issues and look at the level of support for the plan will be presented. To achieve this, the heavy taxation on gift tax and inheritance tax due to the failure of the family business while simultaneously improving the factors that can keep the tax fairness plan was reviewed. A major improvement on the current family business succession plan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ile the subjects of the support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are long-term business requirements, it is very poor in case for the target to be actually applied to. So, the alleviation of conditions are required. Second, the long-term maintenance requirements for the family business during a certain period of served as CEO of the family business activities do not have time for a period of more than 80/100 while serving as CEO if you inherit a family business will need to be able to deduct Third, support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rather than support for the heirs of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work is expected to support inheritance, so successors was initiated more than 80% of regular employment are required to be maintained. Fourth, Currently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is more than 10 years who have a small business to family business inheritance amount for the amount corresponding to 40% of the maximum support is up to ₩10,000,000,000 This, as well as the tax on capital gains tax is also to give too much support. Support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fair taxation obligations to maintain the family business with a period of tax deferred taxation and the family business during the grace period, if you adhere to one tax exemption, but to sell the family business for the mountain property when the income realization ancestor of the necessary expenses of the successors to the value obtained by deducting the capital gain is realized by calculating the capital gain shall be taxed in carried over.

I have confidenc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moval of tax barriers in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to the smooth support for succession of the management rights of family business by taking the method that taxes, when the capital gains are realized, as capital gains tax. And also it is expected that from a fair taxation of view the present tax system will be improved.

<Key words> Family business succession, capital gains tax, a tax carried over, tax barriers, inheritance tax, gift tax

* CPTA in Tax corporate Ghana, Adjunct Professor in Hanyang University